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1. 3. 3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1년 2월 17일

나. 발 의 자: 이용주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3. 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용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 작성 시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“공문서 등”의 범위 확대(안 제3조제4호)
  - 시설관리공단, 출자·출연기관 추가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(안 제7조)
- 국어 교육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(안 제10조)
- 포상 관련 준용 조례에 관한 규정 추가(안 제12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
  -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,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의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적용 대상에 영등포구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을 포함하여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,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음.
  -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제4호에서 “공문서 등”을 사용하는 “공공기관”을 구 본청, 영등포구의회, 보건소, 동 주민센터, 시설관리공단, 출자·출연기관으로 개정하였으며, 이는 영등포장학재단이 추가되는 것임.
  - 안 제7조에서는 개정된 인용 법률인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반영하였음.

- 안 제10조에서는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.
- 그 외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를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를 비롯한 그 산하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등에 대해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, 인용 상위 법령을 정확하게 표기한 것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주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 305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1년 2월 일

발의자 : 이용주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 작성 시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광고물 등 한글 표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(안 제7조)
- 나. 국어 교육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규정(안 제10조)
- 다. 포상 관련 준용 조례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어기본법」,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,  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
법률 시행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어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”를 “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”으로, “촉진하고 국어의”를 “촉진하여 국어”로, “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”을 “마련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「국어기본법」 제13조”를 “「국어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분청·의회·보건소·동 주민센터·시설관리공단·문화재단”을 “구 분청·영등포구의 회·보건소·동 주민센터·시설관리공단·출자·출연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영등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어문규범”을 “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다문화가족”을 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국민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상 및 모범국민 표창 조례」”를 “국민과 공무원,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상 및 모범국민 표창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어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----- 촉진하여 국어 -----<br/>----- 마련함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
| <p>제2조(기본이념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(이하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조(기본이념) -----<br/>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                 |
|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/>1. 2. (생략)<br/>3. “어문규범”이란 「국어기본</p>   | <p>제3조(정의) -----<br/>-----<br/>1. 2. (현행과 같음)<br/>3. ----- 「국어기본</p>  |

법」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, 표준어규정, 표준발음법, 외래어표기법,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.

4. “공문서 등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본청·의회·보건소·동 주민센터·시설관리공단·문화재단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공문·공보·시설 명칭·표지판·누리집(홈페이지)·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·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.

제4조(책무)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문서 등의 작성)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

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-----

4. ----- 구 본청·영등포구의회·보건소·동 주민센터·시설관리공단·출자·출연기관 -----

제4조(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-----

제6조(공문서 등의 작성) ① -----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



글로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7조(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)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“광고물 등”이라 한다)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,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,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.

제10조(교육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)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10조(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포상 등)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·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·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구민과 공무원,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-----  
-----.

<삭 제>